

사람 사이 · 신뢰와 존중의 디딤돌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차 례

01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4
02 진료과정 성희롱에 해당해요	8
03 성희롱일까요, 진료과정일까요?	12
04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구제 절차 · 법적구제	20
05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22

일 러 두 기

본 예방안내서는 2013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던 진료과정 성희롱 진정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실제로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 양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성희롱의 법적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3호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1.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2.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

를 성희롱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Q1 업무관련성이란 무엇인가요?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남녀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구직자·민원인·거래처 관계자·용역 업체 종사자·교육생 및 학습자 등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요!

대법원 판례는 권한 남용이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2005두13414)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다양한 근로관계 및 그 밖의 관계 즉 당사자 간 위계질서로 인해 공식적 업무 이외의 관계가 강요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혹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회식자리나 출장지 등에서 일어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Q2 행위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성적 언동이란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성적인 의미가 담긴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하며 여기서 행위자의 언행이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기억해요!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는 성희롱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Q3 성희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고려하되, 양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의 언동이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의료진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됩니다.

진료과정이라는 전문분야의 속성상 의료기관 이용자(=환자)는 의료진(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권력관계에서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의료진이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므로 진료과정에서의 의사와 환자 간의 성희롱 당사자 요건과 업무관련성은 인정됩니다.

의료진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1.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2.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 진료상 혜택을 주는 경우

※ 위 세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언동의 예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한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그 외

-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02 진료과정 성희롱에 해당해요



| 의료진의 성적 접촉

이야기 1

허리통증 때문에 교정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 도중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리더니 주물렀어요!

이야기 2

물리치료 선생님이 남자 한의사였는데, 치료요법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저 같은 여성 환자 치료 때만 뒤에서 끌어안아서 들어 올렸어요!

| 의료진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보여줌

이야기 3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모니터에 있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른 환자가 보내준 건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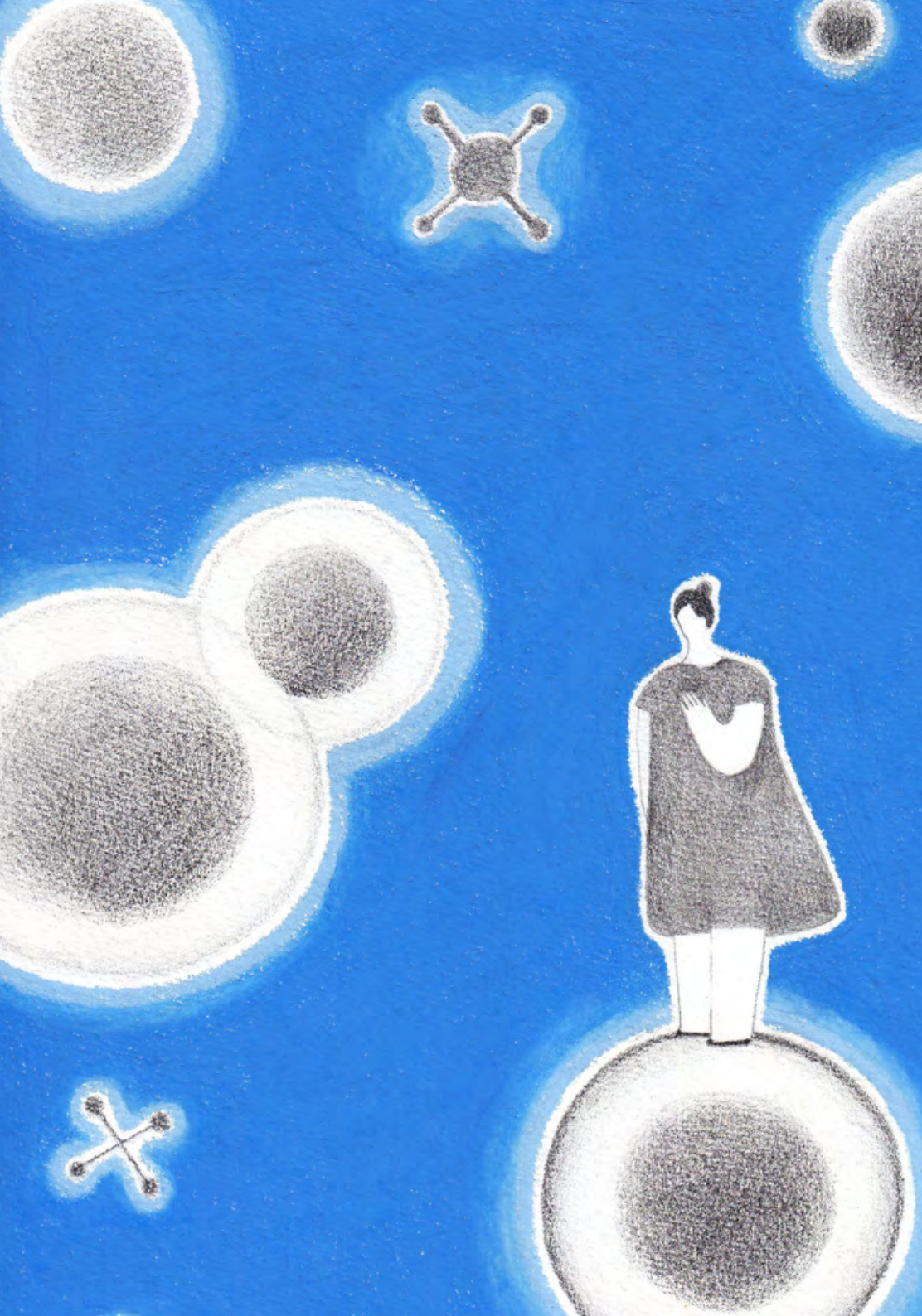
| 의료진의 불필요한 성적 표현, 성적 농담 및 성적 비하, 성적 시선

이야기 4

감기기운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감기증상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성생활과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이야기 5

저는 성소수자인데요,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비하하면서 여성은 출산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말했어요!



이야기 6

의사 선생님이 진료 중에 몸매가 예쁘게 생겼다면서 진료와 무관하게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어요!



주의해 주세요!

의료진은 환자에게 두려움이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거나 정상적인 진료과정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진료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환자는 의료진의 갑작스런 성적 질문이나 성적 농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체 부위 진료 시에는 진료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신체에 대한 개인적인 평을 덧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성적 접근

이야기 7

불면증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치료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다며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갑자기 평소 관심이 있었다며 자신과 사귀면 어떨겠냐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이야기 8

어머니가 암에 걸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머니 치료를 잘 해 주겠다'면서 성적 관계를 요구했어요.



주의해 주세요!

환자는 의료 지식의 부족, 치료의 필요성 등으로 의료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제안이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치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료진의 제의를 진료과정으로 오인하여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 등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성적 접근·성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03 성희롱일까요, 진료과정일까요?

| 진료시 의료진의 설명 부족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 옷을 들어 올리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저는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볼 테니 놀라지 마세요.” “자, 옷을 들어올려 주실래요?” 이렇게 말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예방해요!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에는 사전에 청진 및 촉진 부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환자가 어떤 검사나 치료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쾌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는 반드시 유방, 성기, 항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고 탈의·환복하거나 옷을 들어올리고 진료를 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하도록 요청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산부인과 진료 때 내진을 하기 위해 하의를 벗고 산부인과용 치마만 입은 채 아무런 설명 없이 오랜 시간 대기했어요!



기억해요!

환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의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성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만으로 성희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산부인과에 처음 가는 날이었어요. 왠지 부끄러워서 여의사 선생님이 진료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진찰대에 누웠더니 담당 의사라고 하면서 남자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어요!

이렇게 예방해요!

환자가 동성 의료진을 요청하여 동성 의료진이 진료를 하는 도중, 협진 등의 목적으로 이성 의료진이 동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산부인과 내진 등 환자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경우에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고려하여 대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의료인일 뿐인데 왜 이성으로 생각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 환자의 불쾌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전 남자인데요, 비뇨기과 검진 때 남성 간호사가 검사해주기를 요청해봤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외국의 사례 |

샤프롱(Chaperone) 제도 도입

미국의사회(AMA, American Medical Assosiation)와 영국의사회(GCM, 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샤프롱이란 제도를 두고 있어요.

※ 샤프롱이란


진료실이나 검사실에서 여성·미성년자·지적장애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 간호사 등이 함께 있게 함으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샤프롱 제도는 환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An illustration featuring three stylized figures with large, round glasses. One figure is on the left, another is on the right, and a third is at the bottom center. They are set against a background of orange and grey shapes. The central figure is looking upwards.


| 동의 없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한참 동안
진통을 계속하며 힘겨운 출산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학생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해요!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 학생이나 실습생, 수련의 등이 참관해야 할 경우 진료 전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동의에 따라 학생, 실습생, 수련의 등이 동석하는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고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설명이나 동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며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기억해오

산모의 분만이나 진료 시 오로지 교육 목적만이 인정되고 의료진의 성적 함의가 없음이 입증되면 실습생 참관 자체로는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련과 교육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산모나 환자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전에 어떠한 목적과 과정으로 실습이 이루어질지 설명합니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진료를 위한 병원의 차폐시설 미비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바지를 벗고 가운데로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뵈히 보이는데 옷을 갈아입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옷을 갈아입나요?” 했더니 치마로 가리고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여성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도 민망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

산부인과 진료실 안에 들어가니까 옷을 갈아입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이 너무 짧아서 다리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해요!

의료시설에서는 탈의실, 내진실, 치료실 등에 반드시 적절한 차폐 시설을 마련하여 환자가 환복이나 내진 시 진료와 무관한 제3자에게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우려를 갖지 않도록 조치하고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진료 시 환자의 몸을 덮을 수 있도록 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기억해요!

환자가 환복하거나 내진 시 적절한 차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출된 환경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부위를 성적 시선으로 훑어보거나 환자의 신체를 성적 표현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사생활 질문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마침 병원에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은 날이었어요. 접수를 돕던 간호사가 큰 소리로 “결혼하셨나요? 출산 경험은요? 임신중절수술 경험은 있으세요? 최근 성관계는 언제시죠?”라고 물어봤어요. 대기 중인 사람 중에 남자 보호자도 많았는데,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상황에서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이야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임신한 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응급실에 사람이 많은데도 제 성관계 경험에 대해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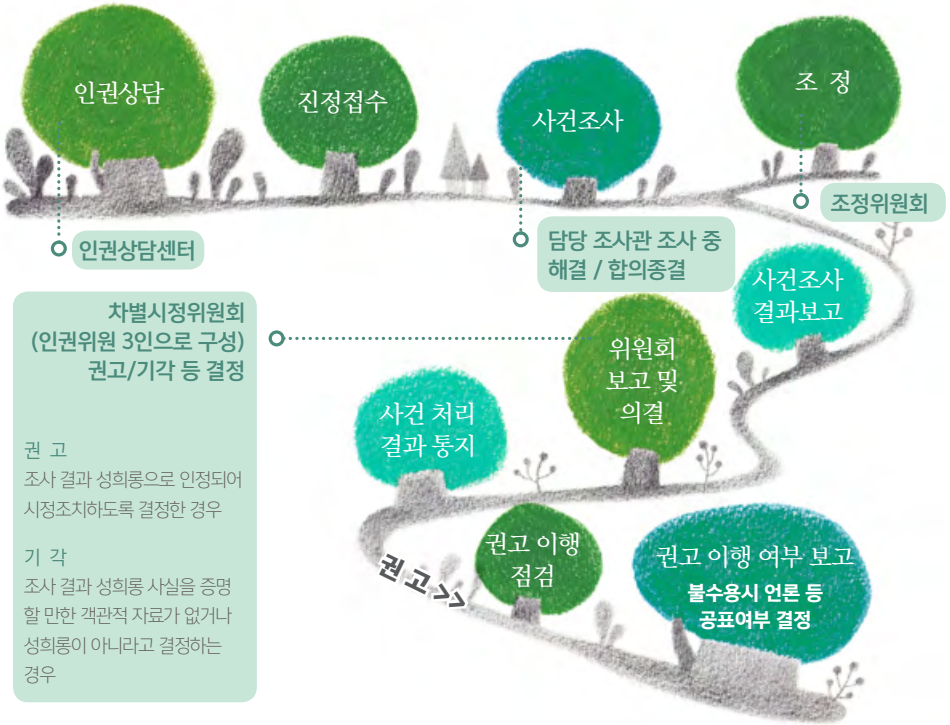
성관계에 대한 질문은 진료 목적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사전 설명 없는 갑작스런 질문에 환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진료 시 혼인 여부나 성관계에 대한 질문의 성격을 미리 설명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당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질문의 의도를 설명한 후 질문하도록 합니다.

제3자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적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환자가 거짓으로 답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환자에게 질문의 의도를 설명한 후 제3자에게 질문과 답변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4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구제 절차



진료과정 중 성희롱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1331)로 전화 · 방문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온라인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2. 법적 규제

| 의료법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자격의 정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사 자격정지 명령 할 수 있음

의료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의사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상습적·반복적으로 행한 의료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 사례 있음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제 1호 (자격의 정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 의료기사 자격정지 15일

| 의료진 단체 윤리지침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의사는 진료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는 환자의 자유의사와 환자와 합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환자와 성적 접촉을 비록하여 애정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윤리지침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간호사는 간호할 때 간호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과 사적 관계 형성을 피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5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

- 독립적인 조사자들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 의료기관 평가항목에서 환자의 신체노출을 보호하는지, 진료 및 처치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도 평가하고 있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3011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부산여성회	051-506-2590
대구여성회	053-421-6758
포항여성회	054-284-0404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05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의료기관 이용자

- 진료 전 의료진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 진료과정 중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불쾌할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진

-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환자들을 이해시킨 후 진료를 진행하고 환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 환자가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호소할 경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진료과정 성희롱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용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차폐시설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의료진 단체

- 의료진 윤리규정에 성희롱 예방 및 규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진료과목별로 진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성희롱 예방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부기관

- 의료진 보수교육에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 성희롱 가해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면허규제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병원의 차폐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희롱 조사 및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상의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차별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누구나 상담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진정접수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331

팩 스 02-2125-9811~2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 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사무소 전 화 국번없이 1331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연산동 1422-8) 국민연금회관 7층

광주인권사무소 전 화 국번없이 133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주) 아모레퍼시픽 5층

대구인권사무소 전 화 국번없이 1331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동인동 2가 50-3번지) 호수빌딩 16층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

발행일 2014년 8월 30일

발 행 국가인권위원회

기 획 차별조사과 02-2125-9944

제 작 콘텐츠하다 contentshada.com

일러스트 윤나리 yoonnari.com

아름다운 바람이 흐르게 하라

나무들 사이에 산소가 통하듯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통할 간격이 필요합니다.

덤석 무례한 손 대신,
무심코 던지는 야한 농담 대신,
예의와 존중이 머물 자리를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 아름다운
바람이
통하도록...

성희룡,
국가인권위원회와
상의하세요.

국번없이
1331

 국가인권위원회

